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057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현빈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9. 7.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7. 8. 접수 제24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할 대출 원리금의 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하기로 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C은행에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B은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 번	채권기관명	보증번호	대출과목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금액
1	C은행 마산지점	D	일반대출금	2018-07-31	2023-07-31	11,000,000

2) 2019. 8. 16. B의 원리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11. 19. 8,836,0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중 46,708원이 회수 상환되었고,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바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345원이다. 결국 B이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돈은 8,789,713원이다.

3) B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7. 8. 접수 제24730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은 약 52,452,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원고와 B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9. 11. 19.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완전히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수익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므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은 당시 피고의 남편이었는데, 협의의혼을 하면서 위자료조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일 뿐 자신에게 사해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해의사는 다른 채권자를 적극적으로 해치려는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다른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피고가 이러한 의미의 사해의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B의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증명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7. 8. 접수 제24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한철

별지